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1997. 4.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7. 2. 4 개정 공포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도소장이 관掌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3조).

1. 농촌지도소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나.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소장 밑에 남부지구지소를 둠(안 제5조).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지도소의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21-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소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지소설치)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소장 밑에 남부지구지소를 둔다.

제6조 (공무원)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